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8647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서우에프앤비대부

변론 종결 2018. 8. 30.

판결 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164,728원 및 그 중 334,853,398원에 대하여는 2017. 9. 25.부터, 759,126,323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각2018. 2.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서우에프앤비대부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우에프앤비대부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등기소
2017. 6. 23. 접수 제44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제1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C

보증기간 : 2015. 3. 26. ~ 2016. 3. 25.

보증금액 : 368,000,000원

채 권 자 : 중소기업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460,000,000원

보증조건 변경 : 보증원금 331,200,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 2018. 3. 23.로

연장

② 제2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D

보증기간 : 2016. 5. 20. ~ 2019. 5. 17.

보증금액 : 446,640,000원

채 권 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558,300,000원

③ 제3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E

보증기간 : 2016. 5. 20. ~ 2017. 5. 19.

보증금액 : 297,500,000원

채 권 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350,000,000원

보증조건 변경 : 보증기한 2018. 5. 18.로 연장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7. 6. 7. 위 각 대출의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7. 9. 25.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334,853,398원을, 하나은행에게 2017. 11. 23. 제2차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452,762,258원 및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306,364,06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1,747,227원을 지출하였고,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437,780원의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A는 2016. 12. 13. 피고 주식회사 서우에프앤비대부(이하 '피고 서우에프앤비'라고만 한다)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담보로 2017. 6. 23. 피고 서우에프앤비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서우에프앤비,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주문 제2.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주문 제2.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7. 6. 23.) 기준으로 시가 합계6,124,822,5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각종 기계를 소유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당시 1채권최고액 3,492,48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2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소외 한영팩킹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F으로 하는 근저당권, 3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한서마이크론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 A는 다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75,490,70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G	73,062,800
2	원고	1,078,703,560
		-759,126,323
3	H	76,398,856
4	I	52,105,026
5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6	J	28,774,950
7	신보2017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910,307,250
8	경기신용보증재단	149,040,000
9	K	120,956,981
10	L 외 49명	767,466,587
11	중소기업은행	27,801,014
12	피고	450,000,000
합계		3,975,490,701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164,728원(= 제1차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334,853,398원 + 제2차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52,762,258원 + 제3차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306,364,065원 + 대지급금 1,747,227원 + 미수금채권 1,437,780원) 및 그 중 제1차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334,853,39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7. 9. 25.부터, 제2, 3차 신용보증약정대위변제금의 합계인 759,126,323원(= 452,762,258원 + 306,364,065원)에 대하여는 그대위변제일인 2017. 11.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9.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우에프앤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A가 2017. 6. 7.경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97,164,728원의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9,867,970,701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3,492,480,000원 + 한영팩킹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900,000,000원 + 주식회사 한서마이크론에 대한 채무 1,500,000,000원 + 위 제1. 라.항 기재 원고 및 G 등에 대한 채무 합계 3,975,490,701원)에 달한 반면, 적극재산은 6,124,822,500원에 불과하여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서우에프앤비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 서우에프앤비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서우에프앤비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 서우에프앤비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서우에프앤비는 피고 A가 기존에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그 처분행위가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서우에프앤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서우에프앤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서우에프앤비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정금영, 판사 임미경